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338
------------	------

발의연월일 : 2016. 11. 7.

발의자 : 이찬열 · 황주홍 · 고용진
김병욱 · 김종회 · 윤관석
민병두 · 박남춘 · 박정
박주민 · 김해영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장애인 등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음.

그러나 현실적으로 전국에서 운행 중인 고속버스나 시외버스 중에서 휠체어 탑승 장치를 설치한 차량은 전무하여 전국의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시외버스나 고속버스의 이용에 있어서 배제당하고 있음.

이에 장거리 노선버스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휠체어 탑승장치를 연차별 · 단계별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현재 운행 중인 노선버스에 휠체어 탑승 장치를 설치하거나 휠체어 탑승 장치를 설치한 신형버스를 도입하는 경우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고속버스나 시외버스 등의 이용에 있어서 차별 없이 안전하

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제5호, 안 제14조의2 신설 및 안 제26조제1항제2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5호 중 “저상(底床)버스”를 “휠체어 탑승 장치를 설치한 버스 및 저상(底床)버스”로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장거리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등) ①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또는 시·군에 걸쳐 있는 노선을 운행하는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장거리 노선버스 운송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차별·단계별로 노선버스에 휠체어 사용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탑승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이하 “휠체어 탑승 장치”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휠체어 탑승 장치의 설치 기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거리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현재 운행 중인 노선버스를 개조하여 휠체어 탑승 장치를 설치하거나 휠체어 탑승 장치를 설치한 신형버스를 도입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6조제1항제2호 중 “저상버스”를 “휠체어 탑승 장치를 설치한 버스 및 저상버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의 수립 등) ① (생 략)</p> <p>②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 ~ 4. (생 략)</p> <p>5. <u>저상(底床)버스</u> 도입에 관한 사항</p> <p>6. ~ 9. (생 략)</p> <p>③ ~ ⑤ (생 략)</p> <p><u><신 설></u></p>	<p>제6조(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의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p> <p>-----.</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휠체어 탑승 장치를 설치한 버스 및 저상(底床)버스</u>-----</p> <p>-----</p> <p>6. ~ 9. (현행과 같음)</p> <p>③ ~ ⑤ (현행과 같음)</p> <p><u>제14조의2(장거리 노선버스 운송 사업자의 준수사항 등) ①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또는 시·군에 걸쳐 있는 노선을 운행하는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장거리 노선버스 운송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차별·단계별로 노선버스에 휠체어 사용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탑</u></p>

	<p><u>승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이하 “휠체어 탑승 장치”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u></p> <p><u>② 제1항에 따른 휠체어 탑승 장치의 설치 기준, 방법 등 필 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u></p> <p><u>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 거리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현재 운행 중인 노선버스를 개 조하여 휠체어 탑승 장치를 설 치하거나 휠체어 탑승 장치를 설치한 신형버스를 도입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 원을 하여야 한다.</u></p> <p>제26조(연구·개발의 촉진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현행과 같음) 2. 휠체어 탑승 장치를 설치한 버스 및 저상버스----- ----- 3. ~ 6.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p>
